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38 발의연월일: 2021. 4. 30.

발 의 자: 임호선·강민정·이형석

오영환 • 기동민 • 이학영

주철현 • 홍익표 • 이장섭

인재근 · 서영교 · 김성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·유통·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 수입업을 등록 신고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.

그러나 사전 신고를 득하고 수 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섞인 퇴비를 살포함에 따라 침출수, 악취발생 등 주민 피해로 이어지 고 있음.

현행법상 비포장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신고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도록 하고, 사용소재지의 지자체에는 신고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음. 또한 적정 공급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매립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
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자 함(안 제14조).

법률 제 호
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80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단서 중 "등록·신고한"을 "등록·신고 및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의"로, "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,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"를 "사용소재지, 공급받는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,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비료생산업자등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에게 비료의 명칭,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아 혅 했 개 법률 제16980호 비료관리법 법률 제16980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(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) 제14조(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)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,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 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 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 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·유통·공급 또는 자신이 사 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・신고 -----등록・신고 한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판 및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의----매・유통・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, 공급 또는 사용일자, 공급 또는 사용물량, 공급 또는 사용면적,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, 보증 재지,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 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농림축산 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 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 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갈음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신고하여야 하며, 공급 또는 사 용소재지의 시장・군수・구청장 은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.

> ② 비료생산업자등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에게 비료의 명 칭,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.

> <u>③</u>·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